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6.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6. 12

다. 의안번호 : 제 2003 - 19호

라. 상정일자 : 2003. 6. 24 (제100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 제안이유

- 현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1972년도에 제정된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문이 있기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분야별 전문지식인들로 하여금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초일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거창군 정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나. 주요골자

- 기관내부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우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법령의 개정으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된 생활보호위원회 항목을 삭제함(안 제3조제8호)
-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 군정자문단 설치근거를 마련함
 - 분과위원회를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개정(안 제7조)
 -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조항 신설(안 제7조의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하춘영)

-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문 지식인들에게 군정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군정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자문단과의 관계 및 성격 규정, 군정위원회와 자문단에 같은 외부 위촉직 위원이 구성되고, 5개 부문별 자문단 구성시 자문단 위원이 50~100명이 되어 위원회 통폐합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며 방만하게 벗어나게 될 경우가 있으며, 자문단이 위원회 내의 하위 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문 지식인들에게 군정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분야별 군정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6.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20호
- 라. 상정일자 : 2003. 6. 24 (제100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인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개정함 (안제10조제2항별표1)
 - 당초 :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다목적홀에 대한 사용료 징수
 - 변경 : 다목적홀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
 -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1회 2시간 기준 10,000원 징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하춘영)

-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이용자 감소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문화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해서는 도내 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 무료화 추세 및 청소년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전시설을 무료화하는 것으로서
- 사용료 수입 감소부분에 대해 군에서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시설사용에 대한 기회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신현기, 이현영 위원 : 별표 1의 시설사용료중 사용료란의 『10,000원』을 『20,000원』으로, 비고란의 단서조항 『단 냉·난방비 별도』를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형성과 청소년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전시설을 무료화하여 청소년들의 시설사용에 대한 기회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 일반인이 다목적홀을 사용할시의 사용료 관련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6.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21호
- 라. 상정일자 : 2003. 6. 24 (제100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가. 제안이유

-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 온천지구의 성격과 조건에 맞게 구역을 획정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고, 구획정리후 각종공부 정리 및 행정관리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 현재 석강리,대초리 중 일부지역을 일부리로 편입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구역 조정 : 종래의 석강리, 대초리 구역중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포함되는 구역을 일부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함.
 - 총 편입필지 : 181필지
 - ▶석강리 ⇒ 일부리 편입 (종래 석강리 토지 98필지)
 - ▶대초리 ⇒ 일부리 편입 (종래 대초리 토지 83필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하춘영)

-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획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온천지구가 3개 리에 걸쳐 있는 지역을 1개 단일 행정리에 편입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향후 일정 추진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이는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의 개발지구 리동 경계조정 건의, 관계 주민 및 이장단 등의 주민의견 수렴,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가조면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완료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획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 온천지구가 3개 리에 걸쳐 있는 지역을 1개 단일 행정리에 편입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향후 일정 추진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6.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22호
- 라. 상정일자 : 2003. 6. 25 (제100회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 제안이유

- 거창군어린이집 관리및운영 조례가 1996년10월14일 제정되고 1998년 5월 7일 일부개정 되었으나 그동안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명 중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종사자 임용시 응시 연령을 조정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 당초 : 기타종사자 20세 이상 40세 이하 → 변경 : 기타종사자 20세 이상 32세 이하
-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 〈시설장〉 - 당초 : 61세 → 변경 : 60세
 - 〈기타 종사자〉 - 당초 : 58세 → 변경 : 57세
-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안제18조)
 - 당초 보육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것을 별도 징계 위원회를 구성함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거창군의회의원,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초등장학사로 구성함

- 징계에 관하여는 거창군 공무원 징계 양정이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함(안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하춘영)

-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 신규 종사자 임용시 연령의 하향조정과 근무상한 연령 조정, 종사자의 존속기간별 연가일수,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등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과 같게끔 규정을 개정하고, 징계위원회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 그리고 관련 법규명을 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신규 종사자의 임용시 연령, 연가일수 등을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과 같게 하고, 관련 법규명을 현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6.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23호
- 라. 상정일자 : 2003. 6. 25 (제100회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하춘영)

-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간에 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설치, 위탁 운영사항,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13조 내지 제18조에 자원봉사단체에 경비지원, 공유재산 사용, 실적제 운영, 실비 지급 및 포상, 봉사활동 중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체계의 확립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 재 생 략

5. 토론요지 : 기 재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6.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6. 12

다. 의안번호 : 제 2003 - 24호

라. 상정일자 : 2003. 6. 25 (제100회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강석재)

가.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2003. 4. 1)에 따라
-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과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별표1)
 -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 ▶ 10만원~50만원까지 ⇒ 30만원~300만원까지
- 과태료 부과대상 중 삭제함.
 - 보건교육 미실시(안 제3호)
 -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안 제4호)
- 과태료부과대상 중 신설함.
 - 담배제조업자의 자료 미제출(안 제5호)
 -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안 제6호)
 - 담배제조업의 미보고 및 허위보고(안 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하춘영)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2003. 4. 1)에 따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정 장소 외에서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판매시(법제9조제2항), 금연구역 미지정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법제9조제4항), 법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미준수시(제9조제4항),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시책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2003. 4. 1)에 따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3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6.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32호
- 라. 상정일자 : 2003. 6. 25 (제100회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가. 제안이유

- 노인·여성·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시설이 빈약한 실정으로 다기능 복합형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밝고 건강한 선진 사회 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함.
- 부지 매입 계획
 - 토지 6필지 5,117m²(1,548평)
 - 건물 3동 535m²(161평)

나. 주요골자

(1)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지목	수량	예정금액	비고
취득	토 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2-1	과수원	2,498	61,201	
취득	토 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3-2	대 지	185	4,533	
취득	토 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4-1	대 지	93	2,278	
취득	토 지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2-7	과수원	585	14,333	
취득	토 지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59	답	963	11,074	
취득	토 지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3	대 지	793	199,043	
취득	사무실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3	건 물	535	73,119	
계				5,652	365,581	

(2) 취득방법

- 지방재정법 제96조에의거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수의계약 매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하춘영)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창군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컴퓨터 조성계획에 따라 한 장소에 다기능 복합형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 6필지 5,117㎡, 건물 535㎡의 취득의 건으로
- 119구조대 사무실 장소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거창읍 대평리 1359번지 963㎡에 11,074천원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지는 거창읍 상림리 16-3번지 대지 793㎡ 199,043천원과 건물 535㎡ 73,119천원 총 272,162천원이 소요되니 119구조대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 다른 적절한 장소는 없었는 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 119구조대, 선거관리위원회, 복합형 복지시설 등의 입지를 현재의 안대로 하여야 하는지와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의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